

#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876 |
|----------|-----|

2009년 7월 10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5월 15일, 김덕배 의원외 10명 제안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21일 회부
- 다. 상정결과 :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 
(2009년 6월 29일) 상정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덕배 의원)

### □ 제안 이유

[시행 2006. 4. 1] [법률 제7478호, 2005. 3.31, 전부개정]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적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골자

가. 제2조제2항 중 “제2조제6호의”를 “제2조제7호의”로 개정 함  
(안 제2조제2항).

### □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수상레저안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.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전문위원 : 박용훈)

#### □ 검토요지

##### 가. 상위법령 준용 조항 변경(안제2조제2항)

-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」(이하 '시민수상구조대조례'라 함) 제2조제2항에서 '물놀이장소'에 대한 정의규정의 근거로서 상위법령인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준용조항인 제2조제6호를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은 법률 제5910호로써 1992년 2월 8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8차에 걸쳐 개정되었는 바, 제1차('05.3.31) 전부개정 당시에 같은 법 제2조(정의규정)제2호에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강이나 계곡에서 급류를 타는 수상레저활동인 래프팅에 대하여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 하면서 같은 조 제6호에서 정의한 '내수면' 규정이 제7호로 개정된 바 있음.

#### < 「수상레저안전법」 제2조(정의규정) 개정 내역 >

| 水上레저安全法<br>[제정 1992.2.8 법률 제5910호]  | 수상레저안전법<br>[전부개정 2005.3.31 법률 제7478호]  |
|---|--|
| <p><b>第2條(定義)</b>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水上레저活動"이라 함은 水上에서 水上레저機具를 이용하여 趣味·娛樂·體育·教育등의 目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活動을 말한다.</p> | 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수상레저활동"이라 함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·오락·체육·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.</p> |
| <b>&lt;신설&gt;</b>   | <p>2. "래프팅(rafting)"이라 함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를 타거나 유락(遊樂) 행위를 하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.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2. "水上레저機具"라 함은 水上레저活動</p>   | <p>3. "수상레저기구"라 함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 또는 기구로서 대통</p>  |

|   |   |
|---|---|
| 에 이용되는 船舶 및 機具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  | 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   |
| 3. "動力水上레저機具"라 함은 推進機關이 附着되어 있거나 推進機關의 附着 또는 分離가 수시로 가능한 水上레저機具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 | 4. "동력수상레저기구"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 |
| 4. "水上"이라 함은 海水面 및 內水面을 말한다.  | 5. "수상"이라 함은 해수면 및 내수면을 말한다.  |
| 5. "海水面"이라 함은 바다의 水流 또는 水面을 말한다.  | 6. "해수면"이라 함은 바다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.  |
| 6. "內水面"이라 함은 河川, 댐, 湖沼, 貯水池 기타 人工으로 造成된 淡水나 汽水의 水流 또는 水面을 말한다.                     | 7. "내수면"이라 함은 하천, 댐, 호수, 늪,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(汽水)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.            |

-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은 같은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경과조치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, 같은 법의 개정사항을 시행일(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)에 위반되지 않도록 「시민수상구조대조례」를 개정했어야 할 사안임.
-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의 체계 적합성 및 완성도 등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는 그 법적인 효력과 시민의 신뢰도 측면에서 심각한 하자를 초래할 수 있고, 무엇보다 조례 제정권자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최고기구로서 가지는 권위와 위상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할 것이며,
- 상위법령 제·개정사항을 조례에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- 이 밖에도 「시민수상구조대조례」의 제명 띄워 쓰기를 비롯한 “알기 쉬운 법령만들기”에 의한 조문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수정안의 요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수정안가결(재석 7명, 전원일치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#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876 |
|----------|-----|

제안년월일 : 2009년 7월 10일

제안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본 개정안 중 조례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제2조제2항 중 “제2조제6호의”를 “제2조제7호의”로 개정함  
(안 제2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- 수정안 대비표 : 따로붙임.

#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1조 중 “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”를 “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”로 한다.

안 제2조 제2호 중 “규정에 의한”을 “규정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 제2항 제1호 중 “인명구조및구급활동”을 “인명구조 및 구급활동”으로 한다.

안 제7조 중 “다음 각호의 1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안 제8조 중 “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”을 “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 중 “임무수행중”을 “임무수행 중”으로 한다.

안 제10조 제1항 중 “임무수행중”을 “임무수행 중”으로, 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| 현행   | 개정안   | 수정안   |
|--|---|---|
| <p>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</p> <p><u>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,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“시민수상구조대”라 함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구조대를 말한다.</p> <p>② “물놀이장소”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.</p> <p>제3조 (설치·운영) ① 소방재난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장의 명</p> |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조 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 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“물놀이장소”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.</p> <p>제3조 (설치·운영) (현행과 같음)</p> | <p>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</p> <p><u>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</u></p>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2조 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제2조제7호-----</p> <p>----- 따른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제3조 (설치·운영) ①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 수정안   |
|--|---|---|
| <p>을 받아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관리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</u>(이하 “구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구조대의 설치장소를 지정한다.</p> <p>제4조 (구성 및 임무) ①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본부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,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한다.</p> <p>② 구조대는 다음 <u>각호의</u> 임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물놀이장소에서의 <u>인명 구조 및 구급활동</u></p> <p>2.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</p> <p>3. 물놀이장소에서의 미아찾기 및 미아보호</p> <p>4. 그 밖에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</p> <p>제5조 (시설·장비 등의 지원) 본부장은 구조대에</p> | <p>제4조 (구성 및 임무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 (시설·장비 등의 지원) (현행과 같음)</p> | <p>-----<br/>-----<br/>-----<u>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</u>-----<br/>-----<br/>-----,<br/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 (구성 및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각 호 의</u> -----<br/>-----,<br/>1. ----- <u>인명 구조 및 구급활동</u><br/>2. 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 (시설·장비 등의 지원)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| 수정안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대하여 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,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 |                      |   |
| <p>제6조 (교육·훈련) 본부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  | 제6조 (교육·훈련) (현행과 같음) | 제6조 (교육·훈련) (현행과 같음)  |
| <p>제7조 (지도·감독) 본부장은 구조대의 활동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구조대원이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</li> <li>2. 감독 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</li> <li>3. 그 밖에 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</li> </ol> | 제7조 (지도·감독) (현행과 같음) | <p>제7조 (지도·감독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<br/>-----,<br/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8조 (활동비) 시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<u>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</u> 제2조 별표 1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</p>  | 제8조 (활동비) (현행과 같음)   | 제8조 (활동비) -----<br>----- 「 <u>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</u> 」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 수정안   |
|--|---|---|
| <p>수 있다.</p> <p>제9조 (보험가입) 시장은 구조대의 <b>임무수행중</b>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 (재해보상) ① 시장은 구조대원이 <b>임무수행중</b>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종류·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11조(포상)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p> | <p>제9조 (보험가입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 (재해보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포상) (현행과 같음)</p> | <p>-----,<br/>제9조 (보험가입) -----<br/>-----<b>임무수행 중</b>-----<br/>-----<br/>-----,<br/>제10조 (재해보상) ① -----<br/>----- <b>임무수행 중</b> -----<br/>-----<br/>-----,<br/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-----<br/>-----<br/>-----,<br/>제11조(포상) (현행과 같음)</p> |

#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”로 한다.

제1조부터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,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“시민수상구조대”라 함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

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구조대를 말한다.

② “물놀이장소”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 (설치·운영) ① 소방재난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관리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(이하 “구조대”

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구조대의 설치장소를 지정한다.

제4조 (구성 및 임무) ①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본부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,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한다.

② 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물놀이장소에서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
2.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
3. 물놀이장소에서의 미아찾기 및 미아보호
4. 그 밖에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

제5조 (시설·장비 등의 지원) 본부장은 구조대에 대하여 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,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6조 (교육·훈련) 본부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7조 (지도·감독) 본부장은 구조대의 활동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
2. 감독 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
3. 그 밖에 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8조 (활동비) 시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 별표 1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 (보험가입)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재해보상) ① 시장은 구조대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종류·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11조(포상)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b>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</b></p>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</u>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,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“시민수상구조대”라 함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구조대를 말한다.</p> <p>② “물놀이장소”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.</p> <p>제3조 (설치·운영) ① 소방재난본부장(이하 “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관리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<u>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</u>(이하 “구조대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</p> | <p><b>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</b></p>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제2조 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br/>-----제2조제7호----- 따른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제3조 (설치·운영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u>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</u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
|  |  |
|--|--|
| <p>의하여 구조대의 설치장소를 지정한다.</p> <p>제4조 (구성 및 임무) ①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본부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,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한다.</p> <p>② 구조대는 다음 <u>각호의</u> 임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물놀이장소에서의 <u>인명구조및구급활동</u></p> <p>2.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</p> <p>3. 물놀이장소에서의 미아찾기 및 미아보호</p> <p>4. 그 밖에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</p> | <p>제4조 (구성 및 임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각 호의</u> -----</p> <p>1. ----- <u>인명구조 및 구급활동</u> -----</p> <p>2.~4.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5조 (시설·장비 등의 지원) 본부장은 구조대에 대하여 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,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 | <p>제5조 (시설·장비 등의 지원) (현행과 같음)</p>  |
| <p>제6조 (교육·훈련) 본부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  | <p>제6조 (교육·훈련) (현행과 같음)</p>  |
| <p>제7조 (지도·감독) 본부장은 구조대의 활동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, 구조대원이 다음 <u>각호의</u>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1. 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</p> <p>2. 감독 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</p> <p>3. 그 밖에 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</p>  | <p>제7조 (지도·감독) -----</p> <p>---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</p> <p>1.~3. (현행과 같음)</p>  |
| <p>제8조 (활동비) 시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</p>   | <p>제8조 (활동비) -----</p>   |

|  |  |
|--|--|
| <p>여 <u>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시행규칙</u> 제2조 별표 1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9조 (보험가입) 시장은 구조대의 <u>임무수행중</u>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 (재해보상) ① 시장은 구조대원이 <u>임무수행중</u>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종류·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<u>「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</u>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제11조(포상)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</p> | <p><u>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,</p> <p>제9조 (보험가입) ----- <u>임무수행 중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,</p> <p>제10조 (재해보상) ① -----<br/>----- <u>임무수행 중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,</p> <p>②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<u>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</u> -----<br/>-----,</p> <p>제11조(포상) (현행과 같음)</p> |
|--|--|